

2020년 소규모 HACCP 인증 지원사업

HACCP 의무적용 확대시행에 따라 영세 제조가공업체에 소규모 HACCP 인증 취득 지원을 통해 위생적인 식품 생산기반 마련

I 추진 방향

- 소규모 HACCP 인증취득을 위해 소규모·영세 가공업체 우선 지원
- 합법적으로 위생적인 건강가공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마련

II 사업 개요

가. 사업기간 : 2020. 3 ~ 12월

나. 사업비 : 60백만 원(군비 30, 자담 30)

※ 업체당 보조금 지원 상한액 : 10백만 원

다. 사업량 : 3개소(신청 대상자 및 신청금액에 따라 변경 가능)

라. 사업내용 : HACCP 인증취득에 필요한 위생안전 시설·장비 및 설비

< 지원 범위 >

- HACCP 인증취득 희망구역 개보수 : 작업장 바닥, 벽, 천장, 출입문 및 창 등
 - 칸막이 공사(분리, 구획 등) 비용
 -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 : 공조기, 환기시설, 에어커튼 등
 - HACCP 적용에 필요한 기본위생설비
 - 위생전실 설비 : 에어샤워, 손 세척기, 손 소독기, 자외선 소독기 등
 - 방충방서 설비 : 포총등, 설치류 포획 장비 등
 - 이물 제어장비 : 금속검추기 등
 - 유해미생물(노로바이러스 등) 제어장비 : 지하수 살균·소독장치 등
 - 기타 HACCP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시설·장비 등
- ※ 단순 제품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(냉장, 냉동 등) 등은 지원대상 제외

마. 지원대상 : 농식품제조가공업체

<식품제조·가공업소 HACCP 의무적용 품목>

어묵, 냉동수산 식품(어류, 연체류, 조미가공품), 빙과류, 비가열음료, 냉동식품(피자류, 만두류, 면류), 레토르트 식품, 배추김치, 순대·알가공업(연 매출 100억 이상인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식품)

<HACCP 의무적용 예정 품목(2020. 12. 1.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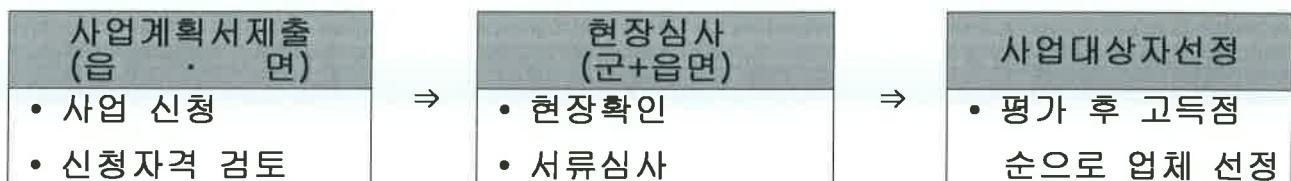
과자, 캔디류, 빵류, 초콜릿류, 즉석섭취 식품, 국수, 유통면류, 특수용도식품, 음료류, 어육소시지

- 1) HACCP 의무적용품목(의무적용예정품목) 생산업체 우선지원
- 2) 매출 실적이 적고(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재무재표) 사업 착수하여 상반기에 사업완료 가능한 사업자 우선 지원 : 영세가공업체
- 3)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업체 후순위 적용
- 4) 2019년 보조금 수혜업체는 후순위 적용(경합시)

바. 신청기한 : 2020. 4. 10.까지

III 선정절차

가. 추진절차



※ 사업 신청상황에 따라 평가 방법이 조정 될 수 있음

나. 신청서류

- 1) 신 청 서(서식 제 1호 관련 제출서류)
- 2) 평가서류(별표 제 1호 관련 증빙서류)

※ 사업자등록증(없을시 사업불가), 부가가치세표준증명이나 재무제표, 자부담통장, 식품제조·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등록필증, 사업부지(건물) 확보 증빙자료(등기부등본), 시설부지 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증빙자료(토지대장, 건축물 대장,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), 각종 인증서류

다. 선정방법 :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(별표1)

IV

사업추진 요령

- 가. 사업실행계획 수립 :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시계획을 수립. 군의 승인과 보조금 교부결정 후 확정.
- 나. 사업시작 전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이행사항 및 절차 준수
- 1)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집행 불가
 - 2) 사업부지 확보 및 자부담 가능여부 확인(확보 불투명 업체 선정제외)
 - 3) 공장 및 위생시설 인·허가(개발행위) 가능 지역 확인
- 다. 사업비 단가 적용시 정부표준단가 및 객관 기준적용
- 라.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 : 사업주관 군·읍면의 관리 감독하에 사업시행
- 1) 사업 조기완료 및 연도내 사업장 가동을 위해 사전 준비 상황 점검철저
 - 2)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담당공무원 수시점검 및 지도 실시
- 마. 사업비 집행 및 정산
- 1) 사업비 정산은 사업완료 즉시 현장 확인 후 실시하며 별도양식에 따라 완료 및 정산보고
 - 2) 증빙서류 및 현품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정산검사 후 지급
 - 3)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사업비에서 공제를 원칙으로 진행함.
 - 4) 보조금 청구 : 보조금 청구서, 계좌사본, 납품업체 계좌사본, 위임장, 세금계산서, 납품확인서, 인감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등

V

사후 관리

- 가. 사업자는 기자재 사후관리 철저
- 나. 읍·면장은 장비 구입 후 관리카드를 작성·비치하고 기자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지도·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명령,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
- 다.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

재 산 명	사후관리기간		처분 제한기준
	부터	까지	
■ 건물 및 부속설비	준공일	10년간	매각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제공,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
■ 주요 기계·장비	구입일	5년간	

VI

추 진 일 정

- 가. 사업신청서 제출 (읍·면→군) : 2020. 4. 10.까지
※ 제출서류 : 사업신청서, 관련 근거자료, 견적서 첨부
- 나.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 : 2020. 4. 15.까지
- 다. 지원 대상자 확정 : 2020. 4. 17.까지
- 라. 보조금 교부 결정 : 2020. 4. 21.까지
- 마. 사업완료 시기 : 가급적 조기집행을 위해 2020. 6월까지 완료

VII

주 의 사 항

- 가. 허위 및 과다 근거서류 및 견적서 첨부 적발시 후순위자 배정
- 나. 사업비/사업량에 따라 업체별 지원단가 부분 조정 가능 함.
(가공업체 다수 배분 지원하기 위함.)
- 다. 사업견적서는 반드시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으로 명시하고, 향후 사업량 및 금액이 상이하여 불이익받지 않도록 유의
- 라. 임의로 사업량 변경 및 금액 변경시 정산불가
- 마. 사업 완료 후 읍·면에서 사업비 3천만 원 이하 사업은 보조금 관리카드 보관 및 사후관리 기계 5년간 / 건물 10년간
- 바. 사업량에 상관없이 평가결과 60점 미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
VIII

행 정 사 항

- 사업신청서 및 신청내역 제출 : 2020. 4. 10.까지 / 읍·면 → 군
친환경농업과
- ※ 증빙서류 구비된 경우에 한해 평가표 점수반영

「별표 제1호」

2020년 소규모 HACCP 인증 지원사업 선정 평가기준

【주소 :

성명 :

】

평가항목	평점기준	배점	평점	비고
계		100		
①HACCP 인증품목 (25점)	HACCP 의무적용 품목	25		식품제조 영업허가증
	HACCP 의무적용 예정품목	15		
	HACCP 미의무적용	5		
①매출실적 (20점)	연매출액 3천만원 미만	20		세무서 부과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재무제표
	연매출액 3천만원 이상 ~ 5천만원 미만	15		
	연매출액 5천만원 이상 ~ 8천만원 미만	10		
	연매출액 8천만원 이상	5		
②운영경력 (20점)	사업자등록 20년 이상	20		사업자등록증
	사업자등록 10년 이상	15		
	사업자등록 5년 이상	10		
	사업자등록 5년 미만	5		
③자부담확보 능력 (10점)	자부담 100% 확보	10		본인 통장 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첨부
	자부담 50% 이상 확보	5		
	자부담 50% 미만 확보	3		
	자부담 미확보, 증빙서류 미제출	0		
④인증실적 (10점)	인증실적 2개 이상 취득한 경우 (유기가공·HACCP, GAP인증, 도지사품질인증, 6차산업, 전통식품)	10		인증서류 확인 (증빙서류 첨부할 경우 인정)
	인증실적 1개 취득한 경우	5		
	인증실적 미제출	3		
⑥수혜정도 (15점)	3년 이내 지원실적 없음('17~'19년)	15		식품분야 지원실적
	3년 이내 5백만원 이하 지원	10		
	3년 이내 5백만원 초과 10백만원 이하 지원	5		
⑦가감점 (±점)	통신판매업신고 등록	+5		통신판매업신고 서류 (증빙서류 첨부시 인정)
	2019년 식품분야 지원사업 포기자	-5		

위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.

2020. . .

○ 조사자 (군) :

(서명)

○ 조사자(읍면) :

(서명)

강 진 군 수 귀하

2020년 소규모 HACCP 인증 지원사업 신청서

신청자	주 소	강진군 읍면				
	성 명		상호명			
	전 화	휴대폰 : , 일반 :				
사업 예정지	강진군 읍면 리 번지					
사업 신청내용	세부사업명 계	규격/형식	사업량 (㎡ 대)	사업비(천원)		착공 예정일
				계	보조	
제출서류	<input type="checkbox"/> 견적서 또는 산출내역서, 자부담금 예치통장 사본 첨부 <input type="checkbox"/> 대상지 식품제조영업허가증, 사업자등록증, 토지대장, 건축물 대장, 평가 관련 증빙자료 등 ※ 기계의 경우 반드시 신 phẩm 사용으로 규격화된 제품만 지원가능 중고품 사용시 지원불가					

위와 같이 소규모 HACCP 인증 지원사업을 신청 합니다

<개인정보 활용 동의>

본인은 2020년 소규모 HACCP 인증 지원사업 신청, 보조금교부결정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래내용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이용에 동의합니다.

*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 : 개인식별정보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생년월일, 주소, 전화번호 등

2020. . .

신청자 주소(소속) : 읍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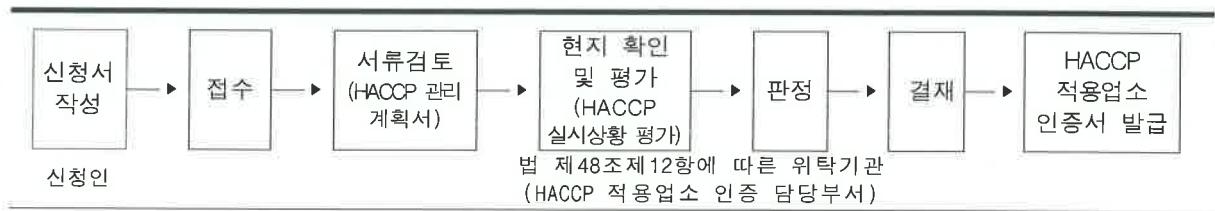
성명(대표) : (인)

강진군수 귀하

식품업체 HACCP 준비사항

□ HACCP* 개요

- 적용대상 : 식품제조·가공업소,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, 식품첨가물 제조업소, 식품접객업소 **의무적용 품목 해당 업체**
- 적용분야 : 연매출 및 종업원 수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별 의무적용
- 관련법령 : 「식품위생법」 제48조, 「시행령」 제33조, 「시행규칙」 제62조
「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」
- 인증방법



* HACCP(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) : HA(위해 요소분석)+CCP(중요관리점)

□ HACCP 선행요건

구 분	적용기준	비 고
영업장 관리	작업장, 건물 바닥·벽·천장, 배수 및 배관, 출입구, 통로, 창, 채광 및 조명, 부대시설	
위생 관리	작업 환경 관리, 개인 위생 관리, 폐기물 관리, 세척 또는 소독	
제조시설 설비 관리	제조시설 및 기계·기구류 등 설비관리	
냉장·냉동시설·설비 관리	냉장시설 10°C 이하, 냉동시설 -18°C이하 유지	
용수 기준	수돗물,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	
보관·운송관리	구입 및 입고, 협력업체관리, 운송, 보관	
검사 관리	제품검사, 시설·설비·기구 등 검사	
회수 프로그램 관리	회수프로그램 수립·운영	